

의안
번호

4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육영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414호

다. 제출일자 : 2025. 2. 3.

라. 회부일자 : 2025. 2. 10.

2. 제안이유

-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자립'의 동행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
(안 제4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¹⁾되어(희망시 25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 성북구 자립준비청년 유형별 현황 >

(2024. 12 기준 / 단위 : 명)

계(명)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일시보호 시설	보호치료 시설	종합시설
37	8	5	24	-		

- 2024. 6.27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26.9%), 경제적어려움 (23.2%), 취업정보·자격부족(23.2%)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필요한 자립지원의 경우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순으로 실태조사됨.

1)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

계	취업 정보,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 관계의 어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긴급한 도움청할 곳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필요한 돈의 부족	외로움, 심리적 부담	기타
100	17.9	5.8	26.9	3.4	4.1	3.7	7.2	0.8	23.2	6.2	0.8

<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 >

계	경제적 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심리상담 지원	경제교육	사회적 관계 지원	기타
100	68.2	2.5	20.2	0.7	3.4	0.9	1.3	1.2	1.6

- 그간 '21년 7월 정부 관계부처 발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여전히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나. 안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구청장은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다. 안 제5조(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자립수당,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 등 지원사업을 명시함.

라. 안 제6조(지원대상)

- 안 제5조 제1호~제2호까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안 제5조제1호는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 한정하고, 안 제5조제2호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함.

마. 안 제7조(예산의 지원),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그간 보호를 받던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의 보호를 종료하고 이른나이에 사회로 진출하여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 관내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됨 없이 타당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지원대상)는, 안 제5조(지원사업)에 규정된 전체 사업대상자가 지원대상임에도 안 제5조제1호, 제2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보니 해당 사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한 듯 표현됨. 이에 안 제6조(지원대상)를 명확하게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

현 행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5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리 및 소재시설에서 퇴소한 자에 한하며, 제5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교육 수준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 개선

-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전 조사였던 '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일반적 특성) '평균 연령'은 22.8세였으며,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 아동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0.3% 순이었다.
- ② (건강)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20년 42.9% → '23년 56.7%로 증가했고,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20년 36.4% → '23년 20.7%로 감소하였다.
- ③ (심리정서) '삶의 만족도'는 '20년 5.3점 → '23년 5.6점(10점)으로 높아졌고,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년 50% → '23년 46.5%로 감소하였다.
- ④ (사회적 관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동네친구 응답(59%)이 가장 높았고, 없다는 응답은 '20년 7.2% → '23년 6.2%로 감소하였다.
- ⑤ (교육) '대학 진학률'은 '20년 62.7% → '23년 69.7%로 상승했고,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다.
- ⑥ (고용·경제) '취업자 비율'은 '20년 42.2% → '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이었다.
- ⑦ (주거) '1인 가구' 비율은 69.5%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 응답(45.3%)이 가장 높았다.
- ⑧ (자립지원 서비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진료비 부담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등)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비·생활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전담인력이 심리·주거·취업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 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인 멘토링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月 10만 원의 활동비 신설)

** (국민일보·삼성) 기업인·종교인 등 사회인 멘토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디딤돌가족’ 캠페인('23~)

아울러 주거, 고용·경제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전세임대 무상지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